

「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우리 군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관람료 징수 규정 신설
-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
 - 전액 감면: 장애인, 6세 이하 어린이, 65세 이상의 사람, 수급자
 - 100분의 50 감면: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

○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위치한 “송어종합공연체험장”의
‘관람료’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

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람료 전부감면 대상자로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자,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규정

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로

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과 한부모가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,

○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평창군 군민”을 “평창군민”으로, “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설치하고, 그”를 “설치한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0조”를 “제9조의2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거짓”을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)”을 “(이용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제3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9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0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분에 따라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반환 :”을 “반환:”으로, “전에”를 “전까지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관람료) ① 군수는 기획 행사 등(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·주관하는 경우를 포함)의 관람료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(장애등급 1~3급에 한함)
2.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9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
 10.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1조의 제목 “(설비 설치의 사전승인)”을 “(이용자의 설비 설치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